

청주지방법원 2023. 4. 21 선고 2022나57866, 2022나57873(병합)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
등 · 건물등철거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3. 4. 21 선고 2022나57866, 2022나57873(병합) 판결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. 7. 15 선고 2020가단482, 2021가단453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한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

담당변호사 이세종

변론종결 2023. 4. 7.

판결선고 2023. 4. 21.

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. 7. 15. 선고 2020가단482, 2021가단 4535(병합)

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충북 영동군 H 대 450㎡를 인도하고,

나.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3.72㎡ 지상 흙벽조 철골판지붕 단층 창고 23.72㎡ 및 같은 도면 표시 7, 8, 9, 10, 11, 12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

내 (나) 부분 39.61㎡ 지상 흙벽조 철골판지붕 단층 주택 39.61㎡를 각 철거하며,

다. 공동하여 원고에게 1,589,000원 및 2021. 10. 15.부터 충북 영동군 H 대 450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1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3쪽 17행부터 4쪽 1행까지의 “[인정근거]”란 기재를 “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문 4쪽 3행, 5행, 6행, 15행, 16행, 19행의 “피고 B”를 “피고들”로 각 고쳐 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미리, 판사 황정환, 판사 정태식